

#### [서식 예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(허위의 출생신고)

# 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

1900년 O월 O일생

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길 OO

주소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)

전화 OOO - OOOO

피 고 △ △ △(주민등록번호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####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에 소외 망 김□□를 아버지로, 소외 이□□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, 위 김□□가 마치 원고가 김□□와 피고사이



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.

2.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(원고)

1.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(원고)

1.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(박□□)

1.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(정□□)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 20 ○ ○ 년
 ○ 월
 ○ 일

 원
 고
 ○
 ○
 ○
 (인)

### ○ ○ 가정법원 귀 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민법 제865조, 가사소송법 제26 ~ 28조
제기권자	<ul> <li>・부(夫) 또는 처(妻)</li> <li>・부(夫) 또는 처(妻)의 후견인,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</li> <li>・처(妻)의 전부(前夫)</li> <li>・자(子),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</li> <li>・이해관계인</li> </ul>		
상 대 방	<ul><li>・부 또는 모</li><li>・자(子)</li><li>・검사</li></ul>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・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・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친생자관계 존부사유	<ol> <li>법원에 의한 부(父)의 결정(민법 제845조)</li> <li>자(子)의 친생부인(민법 제846, 848, 850, 851조)</li> <li>인지에 대한 이의(민법 제862조)</li> <li>인지청구(민법 제863조)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</li> </ol>		

#### ※ 제 출 법 원

- 1. 상대방(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)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
- 2.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